#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양정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777

발의연월일: 2021. 7. 28.

발 의 자:양정숙・김홍걸・안호영

조오섭 · 황운하 · 이용호

윤준병 • 이규민 • 심상정

김성주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 정대리인, 스토킹행위의 신고자의 요청으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긴급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의 상대 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에 반해 긴급응급조 치의 취소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위와 같은 통지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.

긴급응급조치뿐만 아니라 그 취소 또한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, 긴급응급조치의 변 경은 사실상 새로운 긴급응급조치를 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 할 때 이에 대한 통지규정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. 이에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또는 변경의 경우에도 사법경찰관이 그 사유를 기재하여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 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7조).

#### 법률 제 호

##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808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가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 리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통지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긴급응급조치를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18083호 스토킹범죄의	법률 제18083호 스토킹범죄의
처벌 등에 관한 법률	처벌 등에 관한 법률
제7조(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)	제7조(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)
① ~ ④ (생 략)	① ~ ④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⑤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
	긴급응급조치가 취소 또는 변
	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
	하여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
	그 법정대리인에게 즉시 통지
	<u>하여야 한다.</u>
<u>⑤</u> (생 략)	<u>⑥</u> (현행 제5항과 같음)